홍보간행물 2013-21

전국 어디서나 1588-0075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든든한 **희망보험**!"

고용·산재보험 가입안내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근로복지공단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사업장

가입대상

▶ **의무가입대상 :** 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 농업 · 임업(산재보험은 벌목업 제외) · 어업 ·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의 사업은 제외

▶ **건설공사 의무가입대상**
- 건설업 등의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건설업 당연일괄 적용)
-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개인직영공사)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이고, 연면적 100㎡ 초과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 초과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기타공사(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이외의 공사)

보험관계 성립신고

▶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은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제출)
※ 성립신고서 제출 시 : 근로자 고용신고서 동시제출
※ 관할지사 찾기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지사찾기" 클릭

미신고 시 유의사항

▶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각종 지원금 ·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사고로 인한 재해보상 시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액의 50%를 산재보험료 외에 추가 징수
▶ 보험관계 성립신고, 보수총액신고, 근로자고용정보(피보험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산금·연체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보험료 신고·납부

▶ 보험료 부담

– 고용보험료(①+②)

① 실업급여사업 :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2씩 부담(근로자 부담분은 매월 급여에서 사업주가 원천징수)

※ 보험료율 : 1.3%('13. 6월 이전 1.1%)

②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주 전액부담

※ 보험료율 : 0.25%~0.85%

– 산재보험료 : 사업주 전액 부담

※ 보험료율 :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사업종류에 따라 다름

▶ 보험료 산정 및 납부

– 부과고지사업장

① 대상 : 건설업·벌목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

② 보험료 :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매월 산정·부과

③ 납부기한 :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고지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

– 자진신고사업장

① 대상 :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

② 보험료 : 연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③ 보수총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노무비율에 의해 산정

- 건설공사 :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 벌목업 : 벌목재적량 × 노무비율

※ 2013년 노무비율 : 건설업(일반건설공사 28%, 하도급공사 32%), 벌목업(벌목재적 1㎥당 10,260원)

④ 보험료 신고·납부기한

- 신규성립사업장 :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납부)

- 기존 성립사업장 : 매년 3월 31일

※ 분할납부신청한 경우 : 1분기 3.31, 2분기 5.15, 3분기 8.15, 4분기 11.15

근로자 고용정보(피보험자)신고

▶ 부과고지사업장의 보험료는 근로자고용개시신고(신규고용근로자), 보수총액신고(기존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되고 근로자고용종료신고에 의해 부과제외됨

▶ 처리기관 :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신고(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신고사유	신고기한	신고방법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될 때	다음달 15일 까지	• 4대사회 보험포털사이트 (www.4insure.or.kr) • 고용산재 보험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 고용보험 EDI (www.ei.go.kr) • 관할지사 전자팩스
근로자의 전보, 휴직,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	
일용근로자 고용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 사유발생	다음달 15일까지	

보수총액 신고

▶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단이 관련법규에 따라 월평균보수를 결정하여 보험료를 산정 ·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됨

구분	신고방법
인터넷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FAX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지사찾기 →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 → 가입지원부 FAX 번호)
우편	• 관할 지사 주소로 우편 송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사찾기"클릭)
방문	• 공단 지역본부(지사)

보험료 정산

신고에 의한 정산	• 매년 3.15까지 보수총액신고를 받아 4월에 정산 • 소멸사업장 :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수총액신고를 받아 정산
조사 정산	• 국세청 근로소득신고자료에 의한 정산 : 매년 9~10월 • 임금대장 등 실지급보수를 확인하여 정산 : 수시

※ 근로자 개인별 국세청 신고내용과 공단에 신고한 보수총액을 다르게 신고할 경우 산업재해 발생시 추가징수에 따른 급여징수금이 발생될 수 있으니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람

고용보험 혜택

▶ 사업주 지원사업

고용유지지원금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휴업 · 근로시간단축 · 훈련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 임금과 훈련비 지원
고령자고용 연장지원금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원금 지급
고용촉진지원금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근로자 지원사업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사정 등으로 퇴직 시 최대 240일분의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 지급
재직자내일배움 카드제	기간제 등 근로자들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실 수강료의 60~80% 지원
근로자 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	• 근로자 본인이 능력개발을 위해 기능대학, 사이버대학 및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학자금을 저리로 대부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직업훈련 수강 시 수강비용 대부

고용 · 산재보험 인터넷 서비스

▶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세요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www.ei.go.kr)**
-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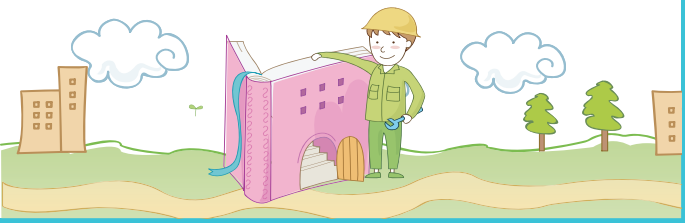

산재보험 혜택

▶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당한 경우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병원비 :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용 간병료 : 간호에 따른 비용 이송료 : 통원치료에 소요된 비용 기 타 : 보조기 비용 등
일하지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 평균적으로 받는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보상금 지급
오랜 치료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치료기간이 2년 경과하고 폐질등급(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지급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1급~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
치료 후 간호비용 **간병급여**	치료 후 간호가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간병급여 지급
직업복귀를 위한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1급~12급)를 받은 근로자에게는 직업훈련비용·훈련수당을,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 지급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게 연금(일시금)지급
장례를 위한 **장의비**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특례

가입대상 및 방법

▶ **가입대상(의무가입)**
① 보험설계사 ②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③ 학습지교사
④ 골프장캐디 ⑤ 택배기사 ⑥ 전속 퀵서비스기사

▶ **보험가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보험관계 신고 절차 :**

신고절차	신고자	신고 사유 및 시기
사업장 성립신고	사업주	• 사업개시 후 최초 종사자 사용일부터 14일 이내 신고
입직신고	사업주	•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이직신고	사업주	•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지 않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사업장 소멸신고	사업주	• 폐업 또는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없이 1년이 경과한 경우에 신고

※ 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 적용제외. 단, 입직일부터 70일 이내 신청 시에는 입직일부터 소급하여 산재보험 적용 제외)

–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하였던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는 경우 재적용 신청 가능(다음 연도부터 산재보험 적용)

보험료 산정 납부

▶ 월 보험료 = 월 보수액 × 산재보험료율
– 월 보수액은 직종별 고시금액 적용
※ 소득에 관계없이 고시한 보수액으로 보험료를 산정

▶ 보험료율 : 해당 사업의 보험료율 적용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1/2씩 부담

직종	보수액(월)	평균임금(일)
생명보험 보험설계사	2,820,160원	92,717원
손해보험 등 보험설계사	1,960,830원	64,441원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2,023,080원	66,512원
학습지교사	1,610,750원	52,956원
골프장캐디	1,943,080원	63,882원
택배기사	1,688,250원	56,275원
전속퀵서비스기사	1,350,000원	45,000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특례

가입대상 및 방법

▶ **가입대상(임의가입)**
-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①~⑥에 해당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
  - 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 ②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 ③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
  - ④ 퀵서비스업자
  - ⑤ 비전속 퀵서비스기사
  - ⑥ 예술인

▶ **보험가입자 :** 보험가입을 원하는 사업자 본인

▶ **가입신청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 ※ 분진·진동·연 및 유기용제관련 업무 종사자의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 필요
- ※ 예술인의 경우 가입신청일 현재 보수 목적의 예술활동 계약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예술활동을 증명받은 내용을 같이 제출

보험료 산정 납부

▶ **월 보험료 =** 월 보수액 × 산재보험료율

▶ **월 보수액은** 10개 등급 중 하나를 선택
- ※ 소득에 관계없이 선택한 월 보수액으로 보험료를 산정

▶ **보험료율 :** 해당 사업의 보험료율 적용

▶ **산재보험료는**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전액 부담

구분	보수액(월)	평균임금(일)
1등급	1,166,400원	38,880원
2등급	1,353,200원	45,106원
3등급	1,540,000원	51,333원
4등급	1,730,000원	57,666원
5등급	1,920,000원	64,000원

구분	보수액(월)	평균임금(일)
6등급	2,110,000원	70,333원
7등급	2,310,000원	77,000원
8등급	3,271,200원	109,040원
9등급	4,232,400원	141,080원
10등급	5,193,600원	173,120원

※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음(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특례

가입대상 및 방법

▶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희망자 누구나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자

※ 5명 미만 농·임·어업·수렵업, 소규모 건설공사, 가사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자 제외

▶ **가입기한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가입확인서

보험료

▶ 본인이 선택한 등급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

등급	보수액(월)	보험료(월)
1등급	1,540,000원	34,650원
2등급	1,730,000원	38,920원
3등급	1,920,000원	43,200원
4등급	2,110,000원	47,470원
5등급	2,310,000원	51,970원
–	–	–

실업급여 지급요건 및 기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 가능

□ 본인 명의로 가입한 사업자등록증 말소(실업상태)
□ 최소 1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 적극적인 재취업(재창업) 노력
□ 적자지속, 매출액 감소, 건강악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그만둔 경우

▶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간 기준보수의 50% 지급

구분	가입기간(피보험기간)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소정 급여일수	90일	120일	150일	180일

※ 만 65세 이전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만 65세가 넘어서 폐업하면 수급요건 해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또다른 혜택

▶ **근무능력향상지원 또는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훈련비용 지원**
※ 근무능력향상지원 1인당 연간 100만원, 내일배움카드는 200만원 한도
▶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이 불가피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정리 절차지원과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방법

▶ 지원대상

– 월보수 130만원 미만('13년 기준, 보수기준 매년 고시) 근로자가 있는 10명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50% 지원

※ (부과고지사업장의 경우)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근로자의 보수를 알 수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한 경우 신고한 달부터 지원

▶ 지원방법

– 부과고지사업장 : 보험료를 기한내 완납하면 다음달 보험료에서 당월분 지원금만큼 차감하여 고지

– 자진신고사업장 : 사업장 계좌로 지원금 입금

▶ 지원신청

– 온라인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신청사항 입력

– 서면 : 제출 서류 작성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우편, 방문, 팩스 가능)

▶ 제출서류

– 신규 사업장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 기존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 (고용보험의 경우) 건설사업장 :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장 확인신청서 서면제출 또는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신청사항 입력

지원금액 예시

▶ 월보수 100만원 근로자 기준 월 지원액

– 근로자 지원액

구분	근로자			
	보험료(월)	지원액(월)	납부할액(월)	연간지원액
계	51,500원	25,750원	25,750원	309,000원
고용보험	6,500원	3,250원	3,250원	39,000원
국민연금	45,000원	22,500원	22,500원	270,000원

– 사업주 지원액

구분	사업주			
	보험료(월)	지원액(월)	납부할액(월)	연간지원액
계	54,000원	27,000원	27,000원	324,000원
고용보험	9,000원	4,500원	4,500원	54,000원
국민연금	45,000원	22,500원	22,500원	270,000원

보험사무대행기관

근로복지공단은 고객의 보험사무처리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에 600여개의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지정하여,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무료로 대행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무료서비스 내용

- 보험가입 · 변경 · 소멸
- 보험료신고
- 보수총액신고
- 근로자고용정보 신고
- 피보험자격신고 등 주요업무 일체

▶ 이용방법

가까운 대행기관을 선택하여 위 · 수탁계약 체결 후 각종 보험사무처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탁

※ 상세내용 및 보험사무대행기관 현황은 "홈페이지(www.kcomwel.or.kr) – 가입 · 납부서비스 – 보험사무대행기관" 참조

퇴직연금 사업

30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퇴직급여수급권 보장 및 노후생계비 마련을 지원하고, 퇴직일시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사업주)에게 좋은 점

-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 전액이 손비로 인정되어 세금 절감 효과
- 퇴직일시금 지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달 적은 금액을 나누어 적립 가능
- 퇴직연금 운용관리수수료율이 저렴(* 적립금 평잔 0.1%, DC형 기준)

▶ 근로자에게 좋은 점

- 공단이 퇴직급여를 관리하므로 사업장의 파산, 도산시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안정적 수익을 통해 퇴직소득 증대 도모
- 근로자가 임의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여,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 가능
- 이자소득세(15.4%)없음, 추가납입분은 연400만원(개인연금저축합산)까지 소득공제

온라인상담신청 http://pension.kcomwel.or.kr

전국 어디서나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관할구역 안내

지사명	관할구역	팩스번호
서울지역본부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0502-223-3101, 0502-223-3201
서울강남지사	강남구	0502-345-3200, 0502-345-3101
서울서초지사	서초구	0502-217-1100, 0502-217-2101
서울동부지사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0502-343-3100, 0502-343-1100
서울성동지사	성동구	0502-460-2100
서울서부지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0502-207-3100, 0502-207-4100
서울남부지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0502-216-3100, 0502-216-4100
서울북부지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노원구	0502-844-3100, 0502-844-4100
서울관악지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0502-210-3100, 0502-210-4100
의정부지사	의정부, 동두천, 구리, 남양주, 양주, 연천, 포천, 철원	0502-828-3100 (0502-828-4100 제외)
춘 천 지 사	춘천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경기도 가평군	0502-301-3100
태 백 지 사	태백시, 삼척시, 동해시, 울진군	0502-330-3100
강 릉 지 사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0502-340-3100
원 주 지 사	원주시, 횡성군	0502-311-3100
영 월 지 사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0502-371-3100
부산지역본부	중구, 동구, 서구, 사하구, 영도구, 남구	0502-661-3100
부산중부지사	부산진구, 연제구	0502-801-2100
부산동부지사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기장군	0502-550-3101
부산북부지사	북구, 사상구, 강서구	0502-318-3100
창 원 지 사	창원시, 창녕군, 함안군, 의령군	0502-268-3100, 0502-268-4100
울 산 지 사	울산광역시	0502-218-3100
양 산 지 사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0502-380-3100
진 주 지 사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하동군, 남해군, 합천군	0502-766-3100
통 영 지 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0502-001-3100
대구지역본부	중구, 동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	0502-599-3101
경 산 지 사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0502-819-2101
대구서부지사	달서구, 고령군, 성주군	0502-609-3100
대구북부지사	북구, 서구, 군위군, 칠곡군 (석적면 중리 구미 국가산업단지 제외)	0502-607-3100
포 항 지 사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0502-288-3100
구 미 지 사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지역	0502-479-3101
영 주 지 사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봉화군	0502-639-3100
안 동 지 사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0502-850-3100
경인지역본부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	0502-077-3101, 0502-451-4100
인천북부지사	부평구, 서구, 계양구, 강화군	0502-530-3100, 0502-540-4100
수 원 지 사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0502-231-3100, 0502-231-4100
부 천 지 사	부천시, 김포시	0502-649-3100
안 양 지 사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0502-463-3101, 0502-463-4101
안 산 지 사	안산시, 시흥시	0502-481-3101, 0502-481-4101
성 남 지 사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양평군, 여주군,	0502-719-3100, 0502-719-4100
평 택 지 사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0502-669-3100, 0502-669-4101
고 양 지 사	파주시, 고양시	0502-810-3100, 0502-810-4100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광산구 제외),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0502-608-3100
광 산 지 사	광산구, 나주시, 영광군, 함평군, 장성군	0502-702-2100
전 주 지 사	전주시, 남원시, 정읍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0502-600-3105
익 산 지 사	익산시, 김제시	0502-839-3100
군 산 지 사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0502-450-3101
목 포 지 사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진도군, 신안군, 완도군, 해남군, 장흥군	0502-240-3100
여 수 지 사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0502-680-3100
제 주 지 사	제주특별자치도	0502-718-3100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유성구제외), 충남 금산군	0502-870-3100
유 성 지 사	유성구, 논산시, 공주시, 계룡시, 세종시	0502-820-2100
청 주 지 사	청주시 상당구, 흥덕구, 청원군, 진천군, 괴산군,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증평군	0502-229-3100
충 주 지 사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0502-860-3100
천 안 지 사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0502-629-3100, 0502-629-4100
보 령 지 사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부여군, 태안군	0502-849-3100

근로복지공단은 고객을 최고의 가치로 섬기며, 깨끗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부조리신고센터 : 우리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고객소통마당 내 Help-Line(헬프라인) 또는 사이버 감사실